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

민생규제 혁신 추진계획

2018. 3.

행정안전부
지방규제혁신과

『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』 추진계획

Ⅰ 추진 배경

○ 최근 2년간 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, 생애주기, 생활불편(3개 분야)에 대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생활 규제를 개선*하여 왔으나

* ('16년) 23건 우수과제 : 소상공인 9건, 생애주기 7건, 생활불편 7건
('17년) 26건 우수과제 : 소상공인 6건, 생애주기 9건, 생활불편 11건

○ 現 정부정책인 **혁신성장, 일자리 창출** 등이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**민생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보다 확대**할 필요성 제기

○ 또한, 포항 지진, 제천화재 등 국가적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**국민안전 규제 강화**에 대한 **국민의견 수렴 필요**

Ⅱ 추진 방향

○ **공모 분야 확대**(신산업, 안전 추가)

– 기존 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, 생활불편, 생애주기 분야에 **신기술·신산업 등 기업활동 규제 및 국민안전 규제*를 추가·확대**

* 국민이 직접 느끼고 불안해하는 사항을 다양한 관점에서 발굴 가능

〈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(★국정과제) 〉

◈ 국민생활 불편은 해소하고 중기·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재설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생명·안전·환경 규제의 혁신으로 국민 보호

◈ 신기술·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

○ **공모 제안자 확대**(기업, 단체 추가)

– 신기술·신산업 및 일자리와 관련한 각종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**기업 및 단체로부터 현장 의견**을 들을 필요가 있고,

– 안전 분야도 **개인과 전문단체로부터 의견**을 받도록 제안자 확대

Ⅲ 추진 방안

1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

○ (공모 기간)'18.3.15.~4.23.(40일간)

○ (공모 주제) **『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』**

○ (제 안 자) **대한민국 국민, 기업, 단체 등 누구나**

○ (공모 방식) 행안부에서 일괄 접수(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)

※ 시·도, 시군구는 국민, 기업의 공모 제안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협조

○ (공모 내용)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관련 **민생규제 혁신 과제**

구 분	분 야	세부 과제(예시)
국민생활 및 안전	취업·일자리	▸ 청년·경단자·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
	국민 복지	▸ 출산, 육아,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
	일상 생활	▸ 교통, 주택,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
	국민안전 강화	▸ 소방, 보건,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
기업 활동	신산업	▸ 신기술·신서비스, 신재생에너지, 첨단의료 등
	창업·입지·고용	▸ 기업 입지, 벤처·중소기업·소상공인 창업, 고용 등
	생산·유통·판매	▸ 상품 생산,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

○ (추진 절차)

【 국민 · 기업 디자인 규제혁신 절차 】

대국민 및 기업 공모 ⇨ 행안부 및 지자체 합동심사 ⇨ 부처 협의·조정 ⇨ 민생규제 심사단 최종심사 ⇨ 토크 콘서트 및 시상 ⇨ 중점과제 관리

○ (공모 홍보)

- 행안부 및 시·도 홈페이지 게시, 보도자료 배포 등 온라인 홍보
- 공모 포스터를 제작하여 주민센터, 주요 대학, 기업 內 게시
- 중소기업연합회, 농업인교류센터,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참여 요청

2 과제 심사 및 우수과제 선정

○ **(심사 절차)** 행안부 자체심사 ⇒ 부처 협의 ⇒ 민생규제심사단 최종심사

- ① 자체심사 : 非규제* 제외하고 우수과제 후보 150여건 선정

  * 단순 건의·진정 등 민원性 과제, 세금 감면·보조금 지급 관련 건의 등

- ② 부처 협의 : 선정 과제 중 실현가능성·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부처 협의·조정을 통해 과제 보완 및 대안 제시

- ③ 최종심사 : 민생규제심사단(15명)* 평가로 우수과제 **약 25건** 선정

  * '생활공감모니터단' 등 일반 국민과 규제, 안전 및 산업 전문가 등

○ **(심사 기준)** 과제 내용의 참신성, 실현 가능성, 효과성 등

평가 기준	세부 내용	비중
참 신 성	과제 내용의 창의성,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	30
실현 가능성	과제 내용의 구체성, 집행 가능성, 타당성 등	40
효 과 성	목적 달성 가능성, 과제 해결 시 유용성, 파급효과 등	30

3 인센티브 및 사후 관리

○ **(인센티브)** 건의자와 소관 부처 및 자치단체 공무원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장관상(25점 내외) 및 시상금 수여

〈 토크 콘서트 행사 (2017년) 〉

◈ (참석) 우수사례 건의자, 국민심사위원단, 부처·지자체 관계자 등 150여명

◈ (진행) 우수과제(27건) 중 8건에 대해 분야별(3섹션) 토크

사례 발표	⇨	플로어 자유발언	⇨	소관부처 의견 제시	⇨	기타 과제 소개	⇨	차관님 코멘트
건의자		참석자		담당 과장		국민심사단		차관님

◈ (시상) 차관님 시상 및 사진 촬영

구 분	시상 내역	인 원
최우수	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100만원	1명
우 수	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50만원	5명
장 려	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10만원	20명

※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(1건) 포함하여 시상(28명)

○ (**사후 관리**) 법령 개정사항,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 등 소관부처별 추진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과제 개선

Ⅳ 추진 일정

○ 「국민·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」 과제 공모(3.15.~4.23. 40일간)

– 지자체, 대학, 기업, 단체 등 공모 포스터 게시 및 참여 협조

○ 행정안전부 자체심사(5~6월) 및 부처 협의·조정(7월)

– 공모과제 보완 및 대안제시를 통한 부처 조정회의(수시)

○ 민생규제심사단 구성(8월) 및 심사 완료(9월)

○ 「국민·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토크 콘서트」 개최(10월)

– 스토리텔링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※ 표창 및 시상금 수여

○ 개선 과제 추진상황 모니터링(11월~)

– 법령 개정사항, 제도개선 등 소관부처별 진행상황 관리

Ⅴ 행정 사항

○ (행안부)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(3.15)

○ (지자체) 시·도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, 포스터 게시 등(3.15)
시도별 소재 공공기관, 대학, 기업, 단체 등 참여 요청(공문)

※ 지자체별 관할구역 내 **공모건수를 합동평가에 반영** 예정이므로 접수 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접수된 자료는 행안부로 제출(4.27한)

※ 2017년 대비 달라진 점

구 분	2017년	2018년 (추가)
제 안 자	국민, 중·소상공인 등 개인	기업, 업체, 조합, 단체 등
공모 분야	생활불편, 생애주기 등	국민안전 및 기업·산업체 애로사항
과제 접수	인터넷, 우편 접수(행안부)	지자체 접수 창구 개설
심 사 단	국민심사단(국민, 전문가)	민생규제심사단(안전, 산업 전문가 포함)
시 상 자	개인, 소상공인	기업, 조합, 단체 등

붙임1 **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(공고문)**

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(법령, 제도, 규정 등)를 개선하기 위해 『**국민·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**』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

생활 속 불편, 기업 활동,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(**규제 분야**)에 대해 국민, 기업, 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(과제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공모 개요

○ 공모기간 : 2018.3.15.(목) ~ 4.23.(월)

○ 공모주제 : 『**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**』

○ 공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 , 기업, 단체 등 누구나

○ 공모과제 : 민생규제 혁신 과제(7개 분야) ※ 복수과제 공모 가능

구 분	분 야	세부 과제(예시)
국민생활 및 안전	취업·일자리	▸ 청년·경단자·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
	국민 복지	▸ 출산, 육아,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
	일상 생활	▸ 교통, 주택,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
	국민안전 강화	▸ 소방, 보건,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
기업 활동	신산업	▸ 신기술·신서비스, 신재생에너지, 첨단의료 등
	창업·입지·고용	▸ 기업 입지, 벤처·중소기업·소상공인 창업, 고용 등
	생산·유통·판매	▸ 상품 생산,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

□ 공모 방법

○ 제출 서식 :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(분량제한 없음)

○ 제출 방법 : 전자우편(realcalla@korea.kr) 또는 우편*

*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

※ 주소 : (03171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, 1209호 지방규제혁신과

□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

○ 선정기준 : 참신성(30%), 실현 가능성(40%), 효과성(30%) 등

평가 기준	세부 내용	비중
참 신 성	과제 내용의 창의성,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	30%
실현 가능성	과제 내용의 구체성, 집행 가능성, 타당성 등	40%
효 과 성	목적 달성 가능성, 과제해결 시 유용성, 파급성 등	30%

○ 시상내역 : 장관 표창 및 시상금 ※ 수상자 : 개인, 기업, 단체

구 분	시상 내역	인 원
최우수	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100만원	1명
우 수	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50만원	5명
장 려	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10만원	20명

※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시상 수여

○ 발 표 일 : 2018. 10월경

※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안부 홈페이지 게시

□ 기 타

○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,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

※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

○ 문 의 처 :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(☎02-2100-3734)

붙임2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포스터(안)

민생규제 혁신

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

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(법령, 제도, 규정 등)를 개선하기 위해 **국민·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**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생활 속 불편, 기업 활동,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(규제 분야)에 대해 국민, 기업, 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(과제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모기간

2018.3.15.(목) ~ 4.23.(월)

공모자격

대한민국 국민, 기업, 단체 등 누구나

■ **공모과제** : 민생규제 혁신 과제(7개 분야) ※ 복수과제 공모 가능

구 분	분 야	세부 과제(예시)
국민생활 및 안전	취업·일자리	▶ 청년·경단자·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
	국민 복지	▶ 출산, 육아,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
	일상 생활	▶ 교통, 주택,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
	국민안전 강화	▶ 소방, 보건,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
기업 활동	신산업	▶ 신기술·신서비스, 신새생에너지, 첨단의료 등
	창업·입지·고용	▶ 기업 입지, 벤처·중소기업·소상공인 창업, 고용 등
	생산·유통·판매	▶ 상품 생산,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

■ **공모방법** : 이메일, 우편 2가지 중 선택
- 제출서식 : 행정안전부 홈페이지(www.mois.go.kr) 게시(분량제한 없음)
- 제출방법 : 전자우편(realcalla@korea.kr) 또는 우편
  ※ 우편접수는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
  ※ 주소 : (03171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, 1209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

■ **선정기준** : 참신성(30%), 실현가능성(40%), 효과성(30%)

■ **시상내역** :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부상(2018.10월 중 발표)
- 수상자 : 개인, 기업, 단체 등
- 최우수 1명(100만원), 우수 5명(각 50만원), 장려 20명(각 10만원)
  ※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
  ※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시상 수여

■ **기타** :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 유용하는 등 공정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우수과제에서 제외
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
※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

■ **문의처** :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(TEL. 02-2100-3734)

행정안전부

붙임3 민생규제 혁신 과제 작성서식 및 작성예시

〈작성 서식〉

국민·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					관리번호 공 란
제 안 자	성 명	○ ○ ○	연락처	010-0000-0000	
	E-mail	abcd@mois.go.kr	주 소	※ 주민등록된 시·도 및 시·군·구까지 표기	
접수자	기관 (부서명)	행정안전부 (지방규제혁신과)	연락처	02-2100-0000	
분 야		제 목			
관련법령	※ 규제 관련 법령, 조례 및 지침 등 기재				
소관기관	※ 접수부서에서 확인, 작성				
제안 내용	현황 및 문제점	○ ○ ※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			
	개선 방안	○ ○ ※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			
	기대 효과	○ ○ ※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			
2018년 월 일 제안자 :					

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 ※ 꼭 체크해 주세요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제안서 평가 및 시상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
   - 필수정보 : 성명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, 이메일
   - 선택정보 : 주소
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: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
4.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○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□ **동의함** □ **동의하지 않음**

〈작성 예시1〉

<table>
<tr><td colspan="5">국민·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</td><td>관리번호
공 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제안자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홍 길 동</td><td>연락처</td><td>010-0000-0000</td></tr>
<tr><td>E-mail</td><td colspan="2">abcd@mois.go.kr</td><td>주 소</td><td>서울특별시 종로구</td></tr>
<tr><td>접수자</td><td>기관
(부서명)</td><td colspan="2">행정안전부
(지방규제혁신과)</td><td>연락처</td><td>010-0000-0000</td></tr>
<tr><td>분야</td><td>국민
복지</td><td>제목</td><td colspan="3">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</td></tr>
<tr><td>관련법령</td><td colspan="5">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-104호)</td></tr>
<tr><td>소관기관</td><td colspan="5">보건복지부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제안
내용</td><td>현 황
및
문제점</td><td colspan="4">○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(6개월, 12개월)으로 스케일링 (치석제거)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,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,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'13.7.1. 관련법을 개정·시행 하고 있음.
○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"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(1년 1회)"로 주기가 정해져, '13년 7월 ~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~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,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.</td></tr>
<tr><td>개선
방안</td><td colspan="4">○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"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(1년 1회)"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
○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(1월~12월) 조정이 필요함.
-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·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 (http://medi.nhic.or.kr)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(1월~12월)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.</td></tr>
<tr><td>기대
효과</td><td colspan="4">○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,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2018년 월 일
제안자 :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5">**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** ※ 꼭 체크해 주세요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제안서 평가 및 시상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
- 필수정보 : 성명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, 이메일
- 선택정보 : 주소
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: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
4.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○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□ **동의함** □ **동의하지 않음**</td></tr>
</table>

〈작성 예시2〉

<table>
<tr><td colspan="5">국민·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</td><td>관리번호
공 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제안자</td><td>성 명</td><td>홍 길 동</td><td>연락처</td><td>010-0000-0000</td></tr>
<tr><td>E-mail</td><td>abcd@mois.go.kr</td><td>주 소</td><td>충청북도 제천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접수자</td><td>기관
(부서명)</td><td>행정안전부
(지방규제혁신과)</td><td>연락처</td><td>010-0000-000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분야</td><td>입지·생산·판매</td><td>제목</td><td colspan="2">영농폐기물 중 폐반사필름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관련법령</td><td colspan="4">폐기물관리법 제13조(폐기물의 처리기준) 및 제13조의2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의 책무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소관기관</td><td colspan="4">환경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제안
내용</td><td>현황 및
문제점</td><td colspan="4">□ 현 황
○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, 농약 빈병 등은 재활용 품목(EPR 대상 품목)으로, 농민이 마을집하장에 모아 두면, 환경공단에서 순회수거 후 수거 보상금 지급
< 생산자책임(EPR) 재활용 제도 >
생산자가 제품생산시 폐기물 회수·처리에 대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고, 사후 폐기물 회수처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대신 회수 및 처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(본 제도 시행 후 폐기물 회수율이 높아짐)
< 반사필름이란? >
과수열매가 잘 익도록 지면에서 햇빛을 반사시키는 은박필름
○ 과수,인삼 등 원예농가에서 사용 후 매년 반복 배출되는 반사필름폐기물은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,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EPR대상 협약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회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, 농경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.
□ 문 제 점
○ 이에따라 영농 후, 농가에서 일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, 특히 일시에 많은 종량제봉투 구입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농가에서는 농업부산물과 함께 경작지에서 소각 또는 방치하는 등 봄철 산불발생 및 제2의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(실제로 은박필름이 날려 나뭇가지에 걸쳐 있거나, 전선에 엉킬 경우 정전 등 현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)
○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및 배출불편 해소, 그리고 이에 따른 산불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는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배출 및 재활용 체계(EPR제도) 도입이 시급.</td></tr>
<tr><td>개선
방안</td><td colspan="4">□ 개선방안
○ 향후 영농행위에서 발생되는 반사필름폐기물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대상 협약품목으로 지정·수거처리하고, 회수율 제고에 따른 수거 및 처리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.</td></tr>
</table>

		○ 또한 EPR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경우, **반사필름류폐기물**은 재활용으로 분류되어, 농민이 현재 **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 해소**는 물론 농경지 방치 및 불법소각 근절 유도정책 도입 ○ 이를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**재활용체계 구축이 선행**되어야 함. 반사필름폐기물은 석탄(약4,000kcal/kg) 또는 고형연료(3,500kcal/kg)보다 발열량이 우수(약9,000kcal/kg)하여 고형연료(SRF)로 활용하여 화력발전소, 제지플랜트, 시멘트 소성로 등의 **연료로 재활용 가능** **< 지자체(제천시) 재활용 관련 사례 >** ▶ 영농폐기물(반사필름) 시멘트 소성로 열료 재탄생!(연합뉴스,2017.3.6) ▶ 영농폐기물 연료로 재활용!(대전MBC,KBS충주,MBC충북방송, 2017.3.6) ① 배 출 자 : 과수, 인삼 농가 등 600 세대 ⇒ 수집(무상배출) ② 수집운반 : 제천시(자원관리센터) ⇒ 일정기간 수집 후 열원 공급 ③ 처 리 자 : 아세아시멘트(주) ⇒ 파쇄 후 소성로 열원 전량 재활용 ▶ 제천시 : 무상 수거기간 지정 운영(2017.3.20 ~ 3.31) - 600여 과수농가에서 약 200 ~ 300여톤 수거 예정 ※ 현재까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, 전국적으로 약 10,000여톤 내외의 반사필름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됨.
	기대효과	□ 기대효과 ○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"폐자원에너지"로 농업용 반사필름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○ **폐반사필름 영농폐기물 EPR 협약품목으로 지정** 후, **수거 및 처리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**하게 되므로써, **발생 영농폐기물을 전량 회수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		○ **"폐자원에너지화"**에 따른 농가의 반사필름폐기물 **무상배출**로 그동안 배출불편 및 종량제봉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결 등 향후 **농가의 불법소각 및 현장방치에 따른 산불예방과 환경오염 사전예방 효과** ○ 과수농가 등에서 매년 반복되는 폐반사필름 무상처리 요구민원 해결로 **지역농가의 경쟁력 강화**에도 일조. ○ 발열량이 높은 폐반사필름을 석탄연료 대체재로 재활용, "폐자원에너지화" 하므로써 **기업의 생산원가 절감**는 물론 **안정적 처리 가능** ○ **지자체**에서도 종량제봉투로 반입되는 폐반사필름을 현재까지 **단순소각 또는 매립처리**하여 왔으나, 전량 재활용하므로써 **처리비용 절감**은 물론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**온실가스 배출량 저감**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